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10월 12일

나. 제안자: 박주선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10. 2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주선 의원)

제안이유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로부터 강서구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마. 비밀준수 의무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해당부서: 의약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0. 16. ~ 10. 20.)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제정취지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6조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안 제7조에서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제도 운영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여 관련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범죄에 대응하고자, 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과거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치우쳤던 마약류 범죄는 최근 SNS 및 해외직구를 통해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직장인이나 청소년 등 일반 시민까지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1) (2020~2022)’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하수처리장 가운데 3년 연속으로 조사 대상인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30mg)을 고려했을 때 약 1,000명 중 한 명이 매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수치이며
-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범죄 암수율(28.57배)²⁾ 적용 시, 서울시에만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1)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한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다만 검출된 마약류가 전량 인체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가정

2) 암수율: 범죄가 실제 발생했음에도 검거되지 않는 인원의 비율

[출처: 박성수·백민석,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경찰연구, 2019)]

- 그리고 진통제(몰핀), 비만치료제(펜터민), 수면유도제(프로포폴), 수험생 ADHD약 등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³⁾이지만 다른 마약에 비해 구매가 쉽고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약물 오·남용이 의존성이나 내성으로 금단 증상이 생겨 약물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물 오·남용중독 진료현황 자료를 살펴 보면 약물 오·남용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가 2020년 1,187명에서 2021년 1,678명으로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약물의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 이에 정부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022. 10. 26.)」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⁴⁾,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마련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아울러 마약류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연령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3) **향정신성의약품**: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복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주어 사고, 행동, 감정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물질로, 환각, 각성, 수면 또는 진정 등의 작용을 한다.

[출처: 약학정보원 약물백과]

4)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023. 4. 18.)

-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 후 4개월간 5,809명 적발
- 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6억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감시
-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초중고 마약예방교육 강화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